

h·well
국민건강보험



보도자료

보도일시

배포즉시

담당부서 요양급여실

부장

문정욱

033)736-3804

배 포 일

2020.7.20.[월] [총2매]

팀장

김윤경

033)736-3860

배포부서

국민
소통실

부장 임영희 팀장 최재우
033)736-1435, 1430

건보공단,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2년으로 확대

- 장기요양보험 유효기간 연장 대상자 31만 명 불편 해소 -

- 국민건강보험공단(이사장 김용익)은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는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」이 7월 14일부터 시행되었다고 밝혔다.
- 이번 개정안은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확대 적용하는 내용으로,
 - 1~3등급 수급자의 경우 동일등급 유지기간이 평균 1.79년에서 2.39년으로 1년 내 등급변화 가능성이 낮은 현실을 반영하여, 심신 상태 회복이 어려운 고령의 수급자가 매년 반복적으로 갱신조사를 받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이다.
- 수급자가 등급판정위원회의 결정으로 유효기간이 6개월 연장된 경우도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이 2년으로 확대 적용된다.
- 공단은 부칙 제2조에 따른 이 영 시행당시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이 진행중인 경우 적용되는 유효기간 연장 대상자 311,294명에게 ‘노인 장기요양보험 인정 유효기간 연장 안내서’를 지난 7월15일 발송했다.

< 참고 : 인정 시점에 따른 유효기간 변동사항 >

구분	최초인정 시	갱신 시		등급변경 시
		동일등급 판정	다른 등급 판정	
기존	1년	등급에 따라 2~4년	1년	1년
변경 후	2년	전과 동일	2년	2년